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23. 6. 13.>

[ ]주택관리사 자격증
[ ]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(전화번호:)
	근무처		
주택 관리사(보)	자격증(합격증) 번호	제 호(발급 시·도:)	
	취 득 일	년 월 일	
재 발 급 신청사유			

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(합격증서)을 재발급 받고자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사진 3.5㎝×4.5㎝(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)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					
신청서 작성 →	접 수 →	확 인 →	검 토 →	자격증 작성 →	자격증 교부
신청인	시·도(주택관리 담당부서)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